

— 태풍 『루사』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 감면하여 수해민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거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면제
- 대 상
 - 농경지 매몰 및 유실 토지 소유자
 - 농가단위 피해를 30%이상 농가
 - 주택 등 건축물 반파 이상 부속토지 소유자
- 감면세액 ⇒ 8개 읍면동 : 9,965,720원
(종합토지세:7,793,110원,도시계획세:615,360원,지방교육세:1,557,250원)

4.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9조의2,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62조의2 재해구호 및 재해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5. 검토의견

- 태풍『루사』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지난 8.31~ 9.1 전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 선산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한 329명의 납세자에 대한 9,965,720원의 세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10월 납기인 본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1조에 의거 징수유제가 되어있음.
- 지방세법 개별조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피해, 농지소실, 자동차 기계장비 피해 등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농업소득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나 적극적인 수해지구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상기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안으로서 기타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면제하고자 하는 납부자에 대한 선발 기준은 객관적으로 엄선되어야 할 사안임.